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7. 5.(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효재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세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방청인이 많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과 관련한 규정을 공지해 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입니다. 제10조(회의의 방청) 제2항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전자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1차, 제22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3-23-072)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 제13조 제3항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에 대해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작년 9월 (주)SBS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도과한 2023년 4월 19일에 (주)SBS는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차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은 ‘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1.9조원으로 미디어법 제6조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주)SBS M&C의 주식 40%를 보유한 최대액출자자입니다. 관련 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기업집단 태영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디어법사 (주)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하여 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방통위가 소유제한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 2022년 9월 7일 피심인에게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2023년 3월 27일까지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의견입니다. 피심인은 소유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 태영의 자산총액을 10조원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현재 보유 중인 (주)SBS M&C 지분을 매각하여야 하는데 현실적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SBS M&C의 3대 주주인 (주)카카오도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어, 일본기업 J:COM이 최대주주로 등극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우려된다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랩 대기업 소유 규제는 국정과제, 방통위 업무추진 계획으로 시정명령 처분이 의도하는 공익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작년 12월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대기업 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긴 하나 현행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랩 제42조 제2호 벌칙 관련 사항에 대한 처분은 전례를 참조하여 시정명령기간 이후 추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주)S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디어랩법 제13조 제3항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다음의 조치는 무엇이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미디어랩에 따르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 무엇이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벌칙 관련해서는 고발조치….

○ 김 현 상임위원

- 어차피 시정명령을 어길 것이고, 이것이 2차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고, 2024년 1월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데 벌칙조항이 있다면 벌칙조항이 무엇이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미디어랩법 제42조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SBS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송이 들어가면 이 문제는 부지하세월인 것이지요? SBS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 김 현 상임위원

- 만약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차 시정명령 아닙니까? 2022년도에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2023년 3월 27일 미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래서 2차 시정명령이 나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을 어겼을 때 3차 시정명령은 없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런데 기존 방송사의 소유제한 위반의 경우 3차까지 한 전례도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적어도 SBS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과 관련해서 계획으로 보면 2차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안 됐을 경우 3차가 나갑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때 판단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통상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전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기존 방송사 소유제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3차까지 시정명령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어떤 경우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대구MBC의 마감과 울산방송 삼라의 소유제한 위반 건에 대해서 3차례 시정명령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대구MBC 같은 경우에 쌍용의 외국인 소유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3차 시정명령까지 했는데 미이행돼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방통위 설치법으로 따지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고시가 있는 것이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규정을 어겼을 때 규정위반에 대해서 시작점이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 명령을 내리고 2023년 3월 27일 미이행해서 2023년 7월에 2차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보통 시행령 위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법과 시행령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 현 상임위원

- 여러 과를 담당하셨으니까, 통상 방통위에서 방송광고 관련해서 만약 시행령을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아니라 방송광고 관련해서 방송사들이 시행령을 어겼을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왜 시행령을 어겼는지 현장실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잡으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방통위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시행령은 대부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 **김 현 상임위원**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 법 위반에 대한 정해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통상 법 위반 조치가 무엇입니까?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것은 각 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 **김 현 상임위원**
 - 옆에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반하면 고발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할 것이냐에 관해서 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명백하게 답변해 드리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 끼어들지 마십시오. 왜 시작부터 강하게 들어오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지금 위원님께서 시행령이라고 명시하셨기 때문에,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은 규정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그다음에 다른 사안에서도 경험상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저희 담당과장이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

○ 김 현 상임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국장님이 한번 통상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절차가 어떤 것인지 여쭙보는 것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그 법 위반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항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 김 현 상임위원

- 통상.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다른 사안의 법과 시행령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벌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알아들었습니다. 방송사에서 그 규정이나 시행령을 준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려서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개선되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잘하시라, 그리고 이런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할 때는 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리고 소유제한에 관련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국회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하시고 사무처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 말씀 중에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시정명령을...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배 국장님, 그것은 김 현 위원님의 의견이니까 배 국장이 그 의견에 대해 토 달지 마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이 대부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사안은 피심인들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SBS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는 해당 건으로 이미 시정명령을 한 차례씩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른 벌칙조항의 적용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 방송사와 미디어렐사의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조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벌칙조항 적용 보다는 추가적인 시정명령이 좀 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방송산업 소유 제한 규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방송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규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그간의 미디어 환경 변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절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3-23-073)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경과는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은 ‘기업집단 오케이금융그룹’의 소속회사로서 계열회사인 방송광고대행자 주식회사 뉴데이즈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미디어렐사 제이티비씨미디어컴 주식회사의 주식 3.7%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엠비엔 미디어렐의 주식 4.3%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관련 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광고대행자인 (주)뉴데이즈의 특수관계자로서, 미디어렐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법 제13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방통위가 소유제한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 2022년 10월 26일 피심인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이 ‘23년 5월 8일까지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였습니다. 피심인의 주요 의견 및 검토 의견입니다. 피심인은 주식처분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랩법 제42조 제2호 벌칙 사항에 대한 처리는 SBS와 동일하게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이후 추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3-23-074)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다>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23년 5월 1일 공정위는 '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였는데 (주)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따라 광고대행자인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는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심인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피심인은 '기업집단 카카오'의 소속회사로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방송광고대행자 (주)SM C&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미디어랩법 제6조에 따른 미디어랩사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엠앤씨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3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방송광고대행자인 (주)SM C&C의 특수관계자로서, 미디어랩사 (주)SBS M&C의 주식 10%를 소유하여 법 제13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방송광고대행 거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의견입니다. 피심인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였으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해소 노력을 밝혔으나 현재 법 위반 상태이므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주)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2023-23-075)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라>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23년 3월 9일부터 4월 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16일부터 26일에 걸쳐 사전영향평가(통계·자치·성별·부패·개인정보)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원안 동의로 방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16일부터 26일 입법예고 기간에 총 4,74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접수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수 있도록 참조자료를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사전검토에서는 규제심사가 비대상으로 저희에게 답변이 와서 별도의 규제심사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주요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완화와 관련해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의 결합을 금지한 원안을 '수납'행위와의 결합 금지로 수정하여, 전기요금과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고지방식은 지정받은 자가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지행위부터 분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이행 준비기간 필요 관련입니다. 개정령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행 시기를 미리 특정하기보다는, 공포할 날로부터 시행하되 한국방송공사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은 위탁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관련입니다. 징수방식 변경으로 인해 징수비용이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제48조의 위탁수수료 지급기준도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 '징수'한 수신료의 15% 이내를 '청구'한 수신료의 15% 이내로 변경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접수 의견 관련 개정 필요여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 유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별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입법예고안에 대한 단체별 의견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자료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경과사항에 보면 6월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권고사항이 이것만 있었습니까? 빠졌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할 것’ 이 2가지가 권고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만 넣고 하나는 뺐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관련된 권고내용 중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해서 경과사항에 적어 넣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방통위에 온 것이 권고사항 2가지를 가지고 논의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권고안의 취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이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권고안의 취지에는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고,

○ 김 현 상임위원

- 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일단 저희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 김 현 상임위원

- 아니, 분리징수와 함께 권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6월 8일 용산 비서실에서 방통위로 보낸 공문에 2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통위 사무처는 권고안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서 용산 비서실에서 권고안 낸 것을 반쪽짜리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라는 것이 자구만 고쳐져서 나머지가 불편함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은 방통위의 기존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2가지 권고안이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 지적함

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그다음에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인데, 통상 시행령이 공포될 때 사회에 미치는 파장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뒤라' 내지는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라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향후 일정에 포함되야 하는데 안 됐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시행령이 공포된 후 통상 다른 시행령 개정안이 진행될 때는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 후 바로 실시'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이고, 시행령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령에 따라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방법도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포 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처는 공포 후 시행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월 대통령 재가가 나면 그 즉시 시행하면 이후 경과상황을 보지 않겠다, 즉 아까 이야기 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권고사항과 결부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향후 일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사무처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내용 4페이지에 보시면 이행시기를 미리 특정하기보다는 공포할 날부터 한국방송공사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다면 향후 일정 안에 더 들어가야겠지요. 의견이 아니라 일정에는 공포·시행 후에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을 당구장 표시든 뭐라도 들어가서 그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시행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예를 들어 다른 시행령일 경우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 때 문제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경과규정을 둔다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는 향후 일정에 공포·시행만 달랑 있지만 다른 시행령에는 그런 경과상황을 지켜보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아까 불충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 중에 규제심사 절차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과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13일 내부에서 검토했고, 14일 10시경 보고하지 못하게 해서 구체적인 시간은 특정을 못 했습니다만 6월 14일 10시 15분에서 30분경 행정법무담당 관실에서 국무조정실에 시스템으로 요청했고, 규제심사 비대상이라고 하여 국무조정실로

부터 6월 14일 오후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식사는 했으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1시 30분 정도에서 2시 사이에 국무조정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규제심사 비대상 사유라는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정책기획과에서 비규제심사 비대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낸 것입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저희 쪽에서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그쪽에서...

○ 김 현 상임위원

- 적시해서 보낸 것이지요? 내용을 보면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수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명령적 성격을 가지며 위탁업무의 절차와 방식을 안내함으로써 위탁자와 수탁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규제심사 비대상 사유입니다. 방송정책기획과의 입장인 것이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은 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정책기획과에서 정리해서 실무적으로 검토 후 차후에 보고한 것입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으로 해서 절차를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입법예고를 포함한 것들은 위원장님께 보고드렸고,

○ 김 현 상임위원

- 이렇게 정리한 것도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세부 내용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자는 한국방송공사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한국전력공사 아닙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원활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때문에 분리징수가 아니라 통합징수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기존의 입장인 것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겠다는 것은 공적책임을 다 하는 공영방송의 임무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심사의 비규제 대상 사유가 아니라 규제심사의 중요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통위 사무처가 특히 방송정책기획과가 공적책임을 다 하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관련해서 정책을 만드는 부서가 분리징수가 불합리하고 통합징수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2008년도 합리적인 규제방식과 관련한 보고서에 입각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통합징수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입장을 표명해 오다가 느닷없이 위탁자, 수탁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분리징수다라는 것이 객관적 근거가 없고 과학적 토대도 없고 법률적 자문도 없고 법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달랑 내려와서 이러한 원활한 수행이라는 억지 논리가, 이것은 궤변이지요. 바꿨지 않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분리징수하자는 노웅래 의원, 박주민 의원, 오신환 의원, 강효상 의원, 박대출 의원, 전경희 위원, 허은아 의원의 법안 발의에 그동안 어떤 의견을 냈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저희 의견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수용곤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니까 알기쉽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국민들이 잘 몰라서, 지금은 분리징수가 최선의 법이고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96%의 동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96% 동의에 따라서 오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검토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보고했었으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으로 발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방금 이 현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의 생각을 받아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분리징수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라 제 질문은 과거도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할 때 제1기 때 어떻게 했는지 전례와 관례를 삼아서 해 왔고,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존중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한 정책도 이것이 변경될 때 과거에는 어떻게 됐고 그것이 왜 변경됐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6월 5일 이후 한 달

가까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도 공유했지만 공식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김 현 상임위원이 사무처에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법 일곱 번에 걸쳐 분리징수에 대한 국회에 법안 제출이 있었을 때 방통위의 검토의견 무엇이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당시에는 신중검토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 김 현 상임위원

-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신중검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수용곤란으로 나왔고,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표한 것은 아니고 국회행정실에 제출한 의견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 부위원장님, 국회를 주로 담당하시는 상임위원이 계시면 그분께 보고드리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지금 방통위 사무처가 저에게 제출한 것이,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정리한 자료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회 제출용이다, 답변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고,

○ 김 현 상임위원

- 그렇지요. 국회에 나간 공식 입장이지 않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아까 공표하셨다고 하셔서,

○ 김 현 상임위원

- 공식 입장이지 않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렇지요.

○ 김 현 상임위원

-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수신료 징수비용 역시 수신료에서 지불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수신료 징수 효율화 또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고지할 경우 징수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성격을 갖고 결합징수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법원에서도 결합징수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 등으로 현행 결합징수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주민 의원의 답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에 대한 답변도 같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수신료 결합징수를 통한 효율성 및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결합징수 방식 유지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박대출 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 제67조와 법리 부합 여부, 동법 제64조, 제66조 등 수신료 전반의 입법 취지, 제도 변경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전경희 의원에 대해서는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고 결합징수를 통한 효율성 및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결합징수 방식 유지가 타당하고, 분리징수 시 악의적인 수신료 납부 회피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납부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납부 형평성, 해외 사례 및 징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필요하다' 이것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울러 제가 2020년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제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어떻게 받았냐면 "수신료의 법적 성격, 현행 법령은 TV수상기 소지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를 제64조에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조세나 이용요금이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판시를 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된다" 98헌바70입니다. 헌법재판소 판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결정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81년 컬러TV 시청료로 월 2,500원 책정 이후 40년간 동결됐고, 조정안이 세 차례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부과대상은 주거형 주택 세대별 1대 수상기만 수신료로 징수, 이외에는 수상기 대수에 따라 징수한다, '94년부터 징수의 효율성 및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시행령 제33조입니다. 배분, 징수된 수신료는 수탁수수료 '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수탁수수료는 6.15%입니다. 그리고 EBS 배분을 제외하고 K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수신료 관련 현행 법령 규정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가 있습니다.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제64조가 있습니다. 수신료의 결정은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결의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승인한다. 즉, 수신료 결정은 국회 승인이 된다는 법적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입니다.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판매자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한다. 즉, 위임을 받은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 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료 사용은 제65조, 제66조에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당시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도 제도 개요와 법률을 담아서 또 법령을 담아서 보고합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과 관련해서 <붙임> 입법예고안에 대한 단체별 의견 주요내용은 있으나 <붙임 2> 관련 법령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붙임>에 관련 법령을

생략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왜 달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의결사항 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사항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공히 피심인 의견제출, 관련 법령이 다 첨부가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정한 시간과 절차를 밟아서 공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련 법령을 넣어주어야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에 따라 수신료를 그동안 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재원을 마련했고, 그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권한이 있다는 법률관계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법령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 김 현 상임위원

- 뭐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시행령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법률은 넣어야지요. 법령은 못 넣더라도 법률은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률에 기초해서 법령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는 통상적인 시행령 제정안에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도 다수결로 정리할 것이니까 굳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유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네 번째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섯 번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섯 번째 기타인데 이번에 1호로 하셨지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법제처에 보냈지요?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 현 상임위원

- 여기에서 보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통합징수하면 편하다는 국민도 있고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느냐?' 내지는 '편과보도를 하는 KBS 수신료 내지 않겠다', '나는 TV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내겠다' 이런 분들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려고 이것을 단축시킨 것입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법제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 김 현 상임위원

- 법제처 협의가 아니라 사무처가....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1호가 적절하다고 그쪽에서,

○ 김 현 상임위원

- 법제처 의견입니까?

○ 이 현 방송정책기획과장

-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의해서 1호가 가장 여기에 해당한다고....

○ 김 현 상임위원

- 그러면 3호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는 해당 안 됩니까? 의무이지 않습니까? 의무징수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고 싶어서 내고, 내고 싶지 않다고 안 내는 2,50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는 뭐냐 하면 공적책임을 다 하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다 하기 위해서 2,500원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호 항목에 해당된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내지는 방송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방통위는 한 번도 분리징수를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한다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법제처와 의논할 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을 볼 권리와 돈을 낼 의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호가 될 수도 있고, 4호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 아닙니까? '행할 수 있다'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단순한 표현과 자구가 변경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로 했고, 규제영향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 아닙니까? 차라리 4호가 아니었을까요?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규제 개혁위원회에 보낼 때 중요한 사안의 경우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규제가 아니어서 규제심사가 아닐 수 있지만 상임위원이 심의·의결하는 이 시행령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사무처가 하지 않고 진행시킨 것입니다. 즉, 규개위에서 답변이 오기 전에 이미 보고 상정한 것입니다. 14일 오전 10시 규제실에 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호의 분류는 용산 비서실에서 볼 때 신속한 권리 보호라고 볼 수 있지만, 방송관계자가 보거나 국민 다수가 볼 때 또는 상임위원 개인 KBS 애청자인 <인간극장>을 열심히 보고 있는 김 현 위원이 볼 때 '나는 공영방송에 2,500원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파트 공과금 낼 때 합쳐서 통합징수 내는 것이 좋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 하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표현·자구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통위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 봐서도 시행령을 고쳐서 방송법을 뒤흔드는 것을 방통위가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 겸영 규제 완화는 부칙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되어 있습니다. SBS 관련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다수결 의결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무처가 보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1999년과 2008년도 2월 28일 헌법 합헌으로 전원합의제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 만약 법령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나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 입법 소관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법률검토를 요청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검토가 불필요하다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어서 법률검토를 못 했습니다. 연구반, 의견청취, 의견진술, 행정 절차법, 방통위 설치법,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야 하는데 유독 이유도 설명 없이 건너뛰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정치적으로 논쟁이 있거나 쟁점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인 상임위원, 아마 행정기관 중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을 빼고, 독립기구인 감사원을 빼고 상임위원이 5인인 기구는 방통위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라는 것은 상근하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 재적 5명이 전체 재적이고, 그중 과반수로 처리한다, 그러면 재적이 3명이면 그중 과반수가 넘는 2인이 한다. 또 1인이 없을 경우 2인이 하면 2인의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무처가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2인이 표결하면 그 표결은 효용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법한 행위를 하는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추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의견을 내고, 의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의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퇴장하는데 적어도 헌법 정신은 헌법재판소는 9인이 있을 때 중요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관 회의의 경우 5분의 3을 넘어서는, 즉 7인이 있어야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심판절차의 경우 7인 출석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23조에 되어 있습니다. 방통

위는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2008년도 정신에 비추어서 4인 이상인 경우만 대면회의를 통해 주요한 의결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인 이하가 있을 때는 서면회의를 세 번 했고 2인이 있을 경우 회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방통위가 운영되어 왔던 전통이고 관행이고 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졸속으로 추진되는 용산 비서실의 하명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도 어기고 위원회에서 위원 각각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지시가 없이 의결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법률검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심의·의결하는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결정하십시오.

(김 현 상임위원 퇴장)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먼저 김 현 위원께서 본인의 의견만 진술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금 전 김 현 위원님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논의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그리고 관련 법령들은 절대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신료의 금액 그리고 수신료 납부 의무자, 징수 절차 이런 것은 현재 결정과 같이 수신료의 본질적인 사항이고 법률 유보사항이지만 수신료의 징수방법과 관련된 조항, 이 부분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김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서 입법예고기간이 단축되고 또 규제심사 절차가 비구제로 결정되어 그 부분이 생략됐는데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KBS와 한전이 의견도 제출했고, 아까 김 현 위원님이 시행령의 경과규정, 유예기간에 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입법예고기간까지 단축한 그런 사안입니다. 시행령 종전 조항의 존속에 대한 KBS 일부 당사자의 신뢰가 이번 개정안의 공익적 목적을 넘어서는 만큼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공익적 목적이 KBS 일부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의 침해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 KBS와 한전은 구체적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서 제도 시행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개정 이후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방법의 변경에 따른 공사의 경영계획, 자구노력 방안 등을 바로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TV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안건 보고 이후 KBS를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도 학계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논의와 논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신료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유는 현재의 공영방송 KBS의 보도, 제작 등 방송에 대한 불신과 방만한 경영태도에 대한 비판에 더해서 전기요금과 병기해서 수신료가 부과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이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시대적 변화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신료 징수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그동안 얼마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과연 효율적으로 수신료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어서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에게 그 납부 의무가 있지만 부담금 중에서 수신료와 같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돼서 사실상 납부를 강제당하는 다른 부담금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이 KBS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국민이 계속 용인할 만큼 그동안 KBS가 공익성·공공성·공정성을 갖고 수신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공사를 잘 운영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KBS는 방만한 경영 형태를 개선하려는 자구노력을 외면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편파보도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논란을 일으켰고, 정파적 방송으로 인해 방송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는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부당하게 결부시켜 징수하지 말라는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 KBS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분리징수가 KBS의 재원 부족을 야기해서 공영방송의 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징수 관련 대안과 후속조치를 미리 마련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닌 분리징수(안)입니다. 분리징수만으로 바로 공영방송 KBS가 경영위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KBS가 경영 합리화와 효율화에 더욱 노력할 수 있고 스스로 체질 개선과 자기 혁신에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민은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인 수신료를 기꺼이 납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고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간 시행된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관련 여야 법안에서도 그 합리적인 취지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2017년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수신료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동의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의 하나에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일부는 말씀드렸지만 이해당사자 등에서 주장하는 대안 마련과 징수 관련 후속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시급한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 나서 다음에 또 이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시청자 국민의 권익보다 우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 KBS와 한국전력공사는 바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납부선택권을 보장하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납부하게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며, KBS가 원래의 목적대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하며, 오늘 의결 이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김 현 위원님이 중간에 퇴장하신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김 현 위원님 반대의사와 함께 퇴장하시고 이상인 위원님은 사무처 원안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의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 KBS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KBS 수신료는 절대 내고 싶지 않지만 전기료와 함께 고지되고 징수되니 할 수 없이 강제로 내고 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인 KBS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KBS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서에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더블 쿼트로 수신료 수입규모가 현재 6,0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대로 급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리징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토막 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신료를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여 반강제로 징수하지 않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신료를 자발적으로 낼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KBS의 판단은 이미 상식으로 굳어진지 오래입니다. KBS 수신료는 그렇게 큰돈도 아닙니다. 편의점 도시락 1개 값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한 달 내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편의점 도시락 1개 값도 안 되는 액수라고 하면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액수의 다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KBS가 과연 그런 액수의 돈일망정 수신료를 달라고 국민에게 말할 자격은 있는지, 그럴 염치는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KBS를 균형 잡힌 언론, 세상을 보는 눈을 제공하는 창,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행사와 같이 한때 국민들과 함께 웃고 울던 KBS는 기억조차 희미해져 더 이상 실재 하지 않는 화석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과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KBS는 공정성 논란에 못지않게 커다란 문제가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방만한 경영입니다.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그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한두 곳이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KBS는 단 한 번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BS는 2010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당시 부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까지 전체 인원 가운데 37%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29.2%까지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4년 현재 KBS 인건비 비중은 33%였습니다. 29.2%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는 오히려 그 비율이 더 높아져 36.8%나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반강제적으로 낸 피 같은 수신료를 흥청망청

써버린 것입니다. 고인건비가 KBS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KBS의 이른바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56.2%나 됩니다. 직원보다 간부가 더 많은 기형적인 역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이지만 KBS는 망하지 않았고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수신료 수입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내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내야 하니까. 이런 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17년 감사원의 KBS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KBS에 대해 총 정원 과다 확정, 인력운용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기관 통보와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을 KBS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따라서 지적대로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2017년에 지적된 인력구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KBS는 언론기관이고, 따라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자유라는 매우 그럴듯한 방패를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고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KBS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라도 할라 치면 출입기자를 보내 겁박하듯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따져 묻는 KBS 행태는 여의도에서는 이미 비밀도 아닙니다. 권력을 감시하라고 국민들이 쥐어준 칼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비판자들을 공격하고 조직 이기주의를 방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악용했다는 지적에 KBS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KBS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KBS의 전체 인력 4,400여명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위직은 2,200명 50.6%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021년 기준 1,500여명은 별도의 보직이 없다고 합니다. 보직 없이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년 1억원의 초고액 연봉을 챙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KBS가 걷는 약 6,900억원의 수신료 가운데 20%가 넘는 1,500억원이 이들 KBS 무보직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탕진이라고 하지 않으면 달리 뭐라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KBS 1억 넘는 무보직 연봉자들의 하는 일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1직급 4명이 2직급 갑 팀장의 지휘 아래, 쉽게 이야기하면 국장급이 부장급 지휘 아래 체육관 관리, 복리후생 담당, 체육대회 업무, 전세금대출 및 사후관리, 채권압류관리, 급여공제관리, 도서관의 단행본 수집, 사업지사 행정사무 이런 일들을 하고 연봉 1억원이 넘게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자유와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일 뿐입니다.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 될 것입니다. 수신료 문제에 관한 한 KBS는 개혁의 대상이지 결코 그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KBS는 더 이상 수신료 납부의 주체이고 방송의 주인이자 시청자인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일이 아니라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KBS가 왜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반성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KBS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무처가 제안한 원안에서도 동의합니다. 회의 중 김 현 위원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상인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제가 동의했으므로 재적위원 3인 중 2인이 동의하여 의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3분 폐회 】